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10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임호선·문대림·오세희

이재정 • 차지호 • 정준호

정일영 · 김영호 · 임미애

김동아 · 김영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 시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지정된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설치·폐지"를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의 조정"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합리화계획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경영합리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생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②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체국의 <u>설치·폐지</u> , 사업	2 <u>설치ㆍ폐지 및 관할</u>		
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u> 구역의 조정</u>		
조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